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직원 자녀의 학비를 보조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본교의 교직원 자녀로 한다.(자녀라 함은 동일 호적에 있는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급 범위) ①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개정2012.2.16., 2021.2.16.)

② 금액의 지급범위는 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반액을 8학기(전문대학 4-6학기) 보조한다. 해외 대학은 본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일반고등학교 외(국외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등)는 정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9., 2017.12.11., 2021.2.16.)

③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제외한 학비보조금을 지급한다.(개정 2024.08.21.)

④ 학비 보조금의 지급 범위는 제3조 ②항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08.21.)

제4조(지급시기) ① 등록금 1기분은 2월에, 2기분은 8월에 그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경우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출 서류) 학비 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비보조금 신청서(학교 소정양식)
2. 합격통지서 및 재학증명서, 복학증명서(최초 1회)
3. 등록금 통지서 및 영수증

제6조(감액 지급)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자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다음과 같이 감액 지급한다.

구 분	정직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 및 휴직 기간 중		
			봉급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5할이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보조금액의 2/3	보조금액의 2/3	보조금액의 2할	보조금액의 3할	보조금액의 5할

부 칙

(시행일) 이 시행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당시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해 2012년 1학기분에 해당하는 학비를 소급적용하기로 하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